SEIN

NEWSLETTER559

August 2021

[관세청] 베트남의「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발행 안내

최근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ㅇ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
- ㅇ 베트남 측이 관세청 제안을 수용하여 시행지침 발표 ['21.8.17]

II. 베트남측 시행지침 주요내용 ['21.08.17]

1. 주요 내용

- ㅇ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u>한국산 수입물품</u>에 대한 <u>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u> 시, C/O 원본 대신 <u>사본(C/O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을</u> 한시적으로 허용
- ※ 베트남 세관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ustoms.go.kr/co.html)에서 우리나라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이 발행한 C/O의 진위성 확인

2. 대상 협정

o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3. 시행 일자

- 0 2021.08.17
- ※ 이 지침 해제일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베트남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발행 안내

| Contact



차재영 관세전문가 T 070-6929-3464 E jycha@esein.co.kr



조민지 관세전문가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